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조치일 : 2021. 4. 14.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 7건, 개선사항 : 10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보완 및 결과 활용 강화

□「수협은행은 반기별로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리스크 한도 계획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에 반영하고 있으나, 아래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i) 현재 통합위기상황 분석에 적용하는 '주택급락' 시나리오는 전국 주택가격지수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자산 급등 등 수협은행의 포트폴리오 구성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동 시나리오에 수도권 주택가격변화 등 수협은행의 자산 구성 변화를 감안한 요소를 적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제19호 참고

(ii)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은행의 리스크성향 결정, 익스포져 한도 설정, 사업·자본관리·자금관리·유동성관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제7호 다목 참고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내부자본 관리 등 자본계획 반영 및 유동성 위기 대비 비상자금 조달계획에는 반영하고, 영업전략 수립 등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동 분석결과를 사업 계획 수립에도 반영하여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iii) 현재 위기상황분석을 리스크 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와 별도의 부서가 연1회 이상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제15호 참고

앞으로 담당부서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부서가 위기상황분석 적합성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iv) 일반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은 사전에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은행의 극단적인 위기 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逆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은행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발굴 등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보완을 통해 동 분석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제20호 참고

(v) 현재 실시 중인 통합위기상황분석의 활용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 설계에 사용된 주요 가정이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제32호 사목 참고

차주·지역·산업 편중을 고려한 편중리스크* 및 평판리스크**에 대한 위기 상황분석을 종합적·독립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제41호, 제42호 참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9> 제46호 참고

(2)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전행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데도

수협은행은 해외진출, M&A 등 이사회가 결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명시하지 않아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내재된 리스크 점검기능이 취약하므로,

○ 앞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중요 경영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위원회가 내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사업 진출, M&A, 상당한 리스크를 포함하는 대규모 투자 등

(3) 연간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절차 강화

□ 매년 이사회가 연간 경영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연간 리스크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있어 연간 경영계획에 리스크관리계획에서 정한 위험성향, 중요 리스크 운용 방향 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시 연간 리스크관리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획과 리스크관리계획의 확정시기를 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시장리스크 측정대상 자산 인식 강화

□ 시장리스크 측정 대상인 트레이딩포지션(Trading Position)은 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획득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상품(채권, 상장주식, 파생상품 등)이 해당하나 유동성관리 목적으로 취득한 비트레이딩포지션 금융상품을 트레이딩포지션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 정확한 트레이딩 포지션, 시장리스크 위험가중 자산 및 BIS비율 산출을 위해서 유동성 관리 목적 유가증권을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 인식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수익성 악화에 대비한 경영효율화 등 수익성 관리 강화

□ 최근 자산성장 중심의 경영전략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되었으나, 타행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조달금리가 상승하여 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하방경직성 경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다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비절감도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임금인상분 임금보정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시 대상 직원별로 정확히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특별상여금 지급방식으로 지급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자산성장 중심의 경영전략으로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성장성 및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건전성 비중(10%이하)은 낮게 설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급격한 자산성장을 지속할 경우 레버리지 증대 효과로 이익변동성이 커지고 대내외 경기침체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이사회 차원에서 안정적 성장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연간 경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점 성과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금인상분 임금보정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시 대상 직원별로 정확히 산출하여 지급하는 한편, 경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도 적극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질적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체계적인 원화예대율 관리목표 관리 강화

□ 원화예대율 규제 유예기간 만료일(2019.11.30. 예정)에 경영지도비율을 충족시킬 있도록 동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했어야 함에도 소관부서(▲▲▲▲부)에서 현황파악 목적으로만 원화예대율을 산정하는 등 유예기간 동안에 관련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유예기간 만료일에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경영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시 장·단기 원화예대율 목표수준을 반영하여 이행 현황을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내규에 원화예대율 관련 관리목표, 관리정책, 비상자금조달계획 등을 반영하여, 유예기간 만료일에 원화예대율 관련 경영지도비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조기경보시스템 실효성 강화

□ 수협은행의 유동성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절차 등을 보완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기경보지표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

은행은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등을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조기경보지표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각 지표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위기상황별 자금조달계획 등의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 위기상황은 '주의', '경계', '비상임박', '비상'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조기경보지표 산출대상 기간이 종료된 후 확정지표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조기경보지표가 사전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은행은 조기경보지표를 이용해서 규제지표 등이 충족되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절차를 강화하여 규제지표를 달성해야 하나 규제지표 산출후 규제비율 준수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해소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조기경보지표의 추가 및 수정을 통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이 리스크 사전예방 기능에 충실하도록 작동되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의 적정성

은행의 조기경보지표는 'ALM시스템' 및 '바젤Ⅲ 유동성비율 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되나 일부는 리스크관리부서 담당자가 수기로 산출하고 있으며, 조기경보지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화면, 팝업창 등)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엑셀 등으로 한도초과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서 관리자의 업무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기경보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상항목(한도초과 등)이 리스크 담당자에게 안내(경보 등)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리스크관리부서는 조기경보지표 한도 초과 등의 사유 발생시 관련부서(△△부 등)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식별한 유동성리스크 관련 사항(조기경보지표 한도초과 등)을 소관 부서에 통보하는 시점이 지연되고 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위기상황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대응방안 제출 지연, 명확한 관리방안 미제시 등)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부서에서 리스크 식별시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통보된 리스크와 관련 지체 없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승인조건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미흡

□ 여신 승인 시 실행 전후에 이행하여야 할 조건이 부여된 경우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동 조건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여신 실행 전 승인조건은 심사부가 영업점에서 보고한 이행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실행 후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신의 건전성 확보 및 원활한 회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승인조건부 여신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승인조건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어음할인시 상거래 확인방법 불합리

□ 어음할인 시 상거래 확인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징구할 경우 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 상거래 확인을 위한 서류 징구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징구(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아닌 경우 예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3) 비계량 신용도 가산금리 불합리

□ 기업대출금리 산정 시 영업점장 전결로 비계량 신용도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비계량 신용도 평가항목 중 당·타행 연체횟수 등 일부 항목이 신용평가모형 항목과 중복되고 있어 대출금리가 불합리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계량 신용도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재점검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배당정책 불합리

□ 수협중앙회는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상환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조 제2항에

따라 수협은행의 100% 대주주로서 수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부유보금을 제외하고,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 전액을 수협중앙회에 배당토록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며,

수협은행은 예보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이하 '약정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영정상화에 심각한 장애가 아닌 범위 내에서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배당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예보와 체결한 합의서 및 약정서로 인하여 수협은행이 보통주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제한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서는 합의서상 유지할 수 있는 보통주자본비율(@@.@@%)은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수협은행은 2016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억원, $,$$$억원을 수협중앙회에 배당한 결과,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산출된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 ##.###%로서 합의서상 유지 가능한 보통주자본비율 @@.@@%보다 각각 ○.○○%, ◉.◉◉%씩 낮았음

이는 합의서를 준수하면서도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통주자본으로 편입시킬 수 있었던 보통주자본비율 ○.○○% 및 ◉.◉◉% 수준의 영업이익을 수협중앙회에 배당함으로써 최소한의 보통주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 자본적정성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보통주자본비율 @@.@@%를 최대한 충족한 후에 잔여 이익을 배당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성과보수 재산정 및 조정 업무 불합리

□ 수협은행은 임직원의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 해야 하는데,

내규에 따르면 은행의 실현된 손실여부가 아닌 예보가 매년 제시하는 지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성과보수를 재산정하고

은행은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부정 등으로 정정되면 정정된 내용을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에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규상 성과보수 정정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

성과보수의 재산정 및 조정과 관련한 업무가 미흡하므로 예금보험공사와의 관계상 필요한 사항과는 별도로 성과보수 재산정 및 조정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처리 절차 불합리

□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업무처리 절차 및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내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준칙」제25조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성과평가시 수익성 평가지표(총자산순이익율 및 1인당 조정영업이익 등)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평가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내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준칙」제29조에 의하면 상품개발 부서 및 마케팅 부서는 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등을 위해 금리실무협의회 및 신용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대상으로 신상품 개발 관련 사항 이외에 마케팅 정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마케팅 정책수립이 금리실무협의회 및 신용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대상에 포함되도록 내규에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단장이 금리실무협의회 및 신용실무협의회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동 실무협의회의 최종 의결권을 가진 리스크관리협의회 참여는 제한되고 있으므로 관련 안건 부의시 동 실무협의회를 최종 의결하는 리스크관리협의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단장이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며,

금리실무협의회 및 신용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사전협의 누락시 부서 성과평가 및 민원평가 등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③ 내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준칙」제31조 및 제38조에서 상품개발 및 마케팅 부서는 상품 판매 및 마케팅 실시 후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상품 개발시 금융상품 및 약관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검사기준일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실적이 없고 신상품 개발시 소비자보호 관점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할 경우에도 체크리스트 항목별 관련부서에 입증자료 요청 없이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의견 수렴 및 신상품 개발시 소비자 관점의 업무진단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체크리스트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점검시에는 소관부서에 평가 세부 근거자료를 징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직원 징계업무처리 방법 불합리

□ 은행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시 포상감경 적용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자율처리통보 사항에 대해 인사조치하지 않았거나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인사조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구체적인 포상감경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음과 같이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상벌준칙 제31조에 의하면 업무유공 등으로 은행장 표창 등을 받은 직원의

경우 인사조치시 포상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근속상 및 교육성적 우수상 등

업무유공과 관련성이 낮은 포상에 대해서도 감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포상감경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②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자율처리 통보 건(2015.12.4.)에 대해 은행은 민사소송 진행 등을 사유로 장기간 미정리(2019.5.16.)한 결과, 금융감독원의 자율처리 통보 이후 직원 2명이 승진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직원의 승급 소요기간 제한 등 제재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기인사 시기를 감안하여 인사조치가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업무처리하시기 바람

③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 등'으로 검사결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2018.6.1.)를 받은 직원에 대해 퇴직을 사유로 조치를 면제하면서 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재내용의 인사기록부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인사조치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만을 사유로 조치 면제되지 않도록 퇴직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8)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간 정보관리업무 불합리

□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업무위탁하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와 관련없는 수협중앙회 직원(@@명)에게 상시적으로 전자결재 문서 열람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목적외 사용여부* 및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대책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에 따라 수협중앙회에게 수협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부여

○ 정보공유 필요시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제공범위 및 제공목적 등을 명시하여 운영하거나 사전 승인절차 등을 통해 대내 고객정보 및 투자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9) 시장리스크 관리수단 미흡

□ 시장리스크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절차 및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FX SWAP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감도 한도(예: BPV*) 등을 설정하지 않아 금리변동에 따른 잠재적 손실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Basis Point Value: 이자율 0.01%(1 Basis Point) 변동시 채권(또는 관련 자산) 가격 변동분

FX SWAP에 대한 금리 민감도 한도를 설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은행내규 「가격적정성 점검 업무방법」제6조에 의한 장외원화채권 가격적정성 점검 기준*은 구체적인 허용범위가 없어 장외원화채권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적절히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 가격적정성 점검 업무 방법 제6조(장외원화채권): 채권평가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채권실거래 정보에서 산출된 채권종류별, 만기별, 가중평균 수익률 및 시가평균 수익률을 고려하여 거래 내용을 일별로 모니터링

장외원화채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가격적정성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0) 리스크관리 내규체계 불합리

□ 수협은행 내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 등 중요한 개별 리스크에 대한 인식, 측정 및 관리원칙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가 내규 「리스크관리준칙」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하부 내규에서 △△△△△△△장이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대로 수협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 선임근거를 내규에 반영하였으나,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 역할,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반영이 미흡

하여 업무수행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 관련 내규를 정비하여 ①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중요 리스크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통제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 역할 등에 관한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규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